

U	목 표	14.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, 바다,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
	세부목표	14.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
N	지 표	14.b.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, 규제, 정책,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

I. 글로벌 지표 정의 <2유형>

지표명	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/규제/정책/제도적인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
	소규모 어업에 대한 접근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적/규제/정책/제도적 구조를 채택하고 시행하는 국가들의 진행 상황을 의미하며, 소규모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접근성에 대한 국가들의 진전도를 평가함
정의	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(CCRF, Cord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) 설문지에는 소 규모 어업에 관한 다음 3가지 측면을 반영함. 1) 소규모 수산분야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하거나 다루는 법률, 규정, 정책, 계획 또는 전략 이 있는가?
	2) 소규모 어업(SSF, Small-scale Fisheries) 가이드라인(소규모 어업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)을 이행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구체적인 이니셔티브가 있는가? 3) 어업인/직원이 참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문/자문기구가 있는가?
	국가지표는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특히 소규모 어업에 대한 접근권을 촉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실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

Ⅱ. 데이터 설명

글로벌 지표

링크

[데이터] 소규모 어업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, 규정, 정책, 제도적 체계를 적용한 정도에 있어서 국가들의 진전도

	핵심적인 세 영역의 하위 변수들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가중치를 부여하고,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점수를 산출하게 됨	
산식	각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, 모든 하위 변수를 실천하고 있는 경우 1점을 얻게 됨. 변수 1: 소규모 영세 어업만을 목표로 하는 법(총 0.4점의 가중치를 갖는 5개의 하위변수) 변수 2: 소규모 어업(SSF)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이니셔티브(총 0.3점의 가중치를 갖는 10개의 하위변수) 변수 3: 영세 어민과 어업 노동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의 존재(총 0.3 점의 가중치를 갖는 1개의 하위변수)	
	각 하위 변수에 할당된 가중치의 총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진척도 점수를 매김 점수 분류 >0 ~ ⟨0.2 1등급: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아주 낮은 정도 0.2 ~ ⟨0.4 2등급: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낮은 정도 0.4 ~ ⟨0.6 3등급: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보통인 정도 0.6 ~ ⟨0.8 4등급: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보통인 정도 0.6 ~ ⟨0.8 4등급: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보용 정도	
	│ 0.8 ~ <1.0 │ 5등급: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매우 높은 정도 │ │	
측정단위	-	
자료수집방법	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(CCRF, Code of Cu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) 설문지를 통해 각 국가의 국가어업관리부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활용	
시계열 및 공표주기	■ 시계열: 2018년 (한국 데이터 수록)■ 공표: 부정기	
지표소관기구	'l구 식량농업기구(FAO,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)	



■데이터: https://unstats.un.org/sdgs/indicators/database/

■ 메타데이터: https://unstats.un.org/sdgs/metadata/files/Metadata-14-0b-01.pdf